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48
------	-----

2007년 8월 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8일, 이지현 의원외 12인
- 나. 회부일자 : 2007년 6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년 8월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윤병국)

□ 조례안의 제출 배경

- 의원의 자료요구는 각종 안전심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조사, 지역현안 파악 등의 통상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복잡화로 인해 정보우위에 있는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감독·견제하고, 자치입법활동 보장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정활동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99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료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번 이지현의원 대표발의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료수집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자료제출요구는 의원이 시책현안이나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40조), 이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5조의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이 행정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 이때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7조 제4항)

- 한편, 국회에서는 1997년 1월 13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한 바 있음(제128조 제5항).
-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행정정보의 전산화 결과, 집행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음.
- 따라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맞춰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와 자료취합 및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 추세에 맞춰 자료제출 기한을 앞당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제7대 의회 들어 7월 31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3,196건을 분석한 결과, 10일 이내 제출된 경우는 2,078건(65%)에 달하고 있어 자료제출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단축하여도 행정적인 부담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특히 집행부의 고의적 또는 관행적으로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의정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자료제출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p> <p>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③(생략)</p> <p>④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u>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u> 제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 할 수 없다.</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p> <p>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p> <p><u>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u> ... ..</p> <p>... ..</p> <p>... ..</p> <p>... ..</p> <p>... ..</p>